



##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여신금융협회 약관신고 수리일자 : 2019.12.24

대한민국정부  
인정세  
10,000원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 2014년 15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귀중

리스회사용

리스이용자와 연대보증인은 아래 리스차량 및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맞음을 확인하고, 리스조건표 및 첨부된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스회사와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한 시설대여를 의미합니다.)

| 리스차량정보       |  |      |       |          |
|--------------|--|------|-------|----------|
| 차종 / 모델 / 색상 | 등록명의                                     | 차량가격 | 옵션    | 총 차량가격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회사 | 원    | 원     | 원        |
| 차대번호         | 계약대수                                     | 판매사  | 판매 직원 | 금융 담당 직원 |
|              | 1 대                                      |      |       |          |

| 리스조건                 |   |                   |             |   |
|----------------------|---|-------------------|-------------|---|
| 리스기간                 | <input type="checkbox"/> 12 개월 <input type="checkbox"/> 24 개월 <input type="checkbox"/> 36 개월 <input type="checkbox"/> 48 개월 <input type="checkbox"/> 60 개월 <input type="checkbox"/> ( )개월 |                   |             |   |
| 상환방식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리금균등분할   |                   | 납입조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후불                    |
| 리스 종료시 처리            | 반납, 재리스, 구매 중 택일  |                   | 결제방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동이체                  |
| 교통법칙금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 납   |                   | 자동차세 포함여부   | <input type="checkbox"/> 포함 <input type="checkbox"/> 불 포함 |
| 잔존가치 / 유예금           | 원   |                   | 보험료 포함여부    | <input type="checkbox"/> 포함 <input type="checkbox"/> 불 포함 |
| 보증금                  | 원   |                   | 선납금         | 원   |
| 취득원가                 |   |                   |             |   |
| 월 리스료                |   |                   |             |   |
| 보증금/선납금 납입에 따른 예상할인율 | 보증금 / 선납금 / 선납리스료에 따른 리스료의 예상 할인율 및 할인 금액   |                   |             |   |
|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최고요율( 80 %) × (잔여 개월수 / 총 리스 계약 개월수)  |                   |             |   |
| 규정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 규정손해배상금 최고요율( 15 %) × (잔여 개월수 / 총 리스 계약 개월수)  |                   |             |   |
| 승계수수료                | 미회수원금 × 승계수수료 최고요율( 2 %) × (잔여 개월수 / 총 리스 계약 개월수)   |                   |             |   |
|                      | 승계수수료 최소 금액   | 400,000 원         | 승계수수료 최대 금액 | 2,000,000 원   |
| 지연배상금율               | 연 ( 24 %)   |                   |             |   |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 반환지연금율( 100 %)) × 경과일수 (*단, 일리스료는 월리스료의 1/30로 규정함.)]  |                   |             |   |
| 반환자동차평가 및 가치감가비용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또는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br>*감가비 산정기준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             |   |
| 보증조건                 | 보증채무최고액   | 원                 | 보증기간        | 개월  |
| 초과 운행 거리(km)         | 1 만 이하<br>,2 만 이하   | 2 만 초과<br>,4 만 이하 | 4 만 초과      | 약정운행거리<br>1 년 Km  |
| 초과 운행료(km 당)         | 100 원   | 200 원             | 500 원       | 1,000 원<br>*단, 재리스의 경우 기존 리스계약기간의 운행거리를 포함하여 초과운행료를 산정함.  |

| 보험조건 *리스기간 동안 보험료를 본 계약에 포함시키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                              |   |
|--|---|--|------------------------------|---|
| 보험 관리 주체   |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input type="checkbox"/> 리스 이용자   | 보험사  |                              |   |
| 운전자연령  | <input type="checkbox"/> ( )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전 연령  | 대상구분   | <input type="checkbox"/> 개인용 | <input type="checkbox"/> 업무용  |
| 가입조건   | <input type="checkbox"/> 가족한정 <input type="checkbox"/> 부부한정 <input type="checkbox"/> 본인한정 <input type="checkbox"/> 누구나 운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의무가입사항   | <input type="checkbox"/> 대인배상 I II <input type="checkbox"/> 대물 <input type="checkbox"/> 자손 <input type="checkbox"/> 자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필수선택 가입사항  | 대물배상사고  | <input type="checkbox"/> 5 천만원 <input type="checkbox"/> 1 억원 <input type="checkbox"/> 2 억원 <input type="checkbox"/> 무한 | 자기신체사고                       | <input type="checkbox"/> 1 천만원 <input type="checkbox"/> 5 천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
| 업무용차량<br>이용확인서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br>본인은 상기 리스차량의 운용리스 이용과 관련하여, 동 리스차량은 귀사의 리스이용자가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무(계산서 발행처)와관련된 것임을 확인하며,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br>※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필 |     |                   |     |  |
|                | 리스 이 용 자 경 본 인 :  | (인) | 계산서 발행처(공급받는 자) : | (인) |  |





#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안내 사항        | <p><b>1) 중도해지손해배상금 :</b>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리스사에 반납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고객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 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p> <p><b>2) 규정손해배상금 :</b>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금액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p> <p><b>3) 반환자동차의 평가 및 감가비용 :</b> 고객님이 리스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또는 만료 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여 가치 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고객이 제 1 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 협의 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합니다.)</p> <p><b>4) 리스보증금 :</b> 고객은 이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체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 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스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p> <p><b>5) 선납금/선납리스로 :</b>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li> <li>②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br/>(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 23 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음.)</li> <li>③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사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li> <li>④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br/>(*단, 상기 선납금/선납리스로 처리 방법 중 당시는 ③번과 ④번의 방법을 제공하며, 그 중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li> </ul> <p><b>6) 만기 시 처리방법 :</b> 리스계약 만기 시 자동차구매 또는 반납(운용리스만 해당), 재리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실 경우, 고객님 명의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대 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차주가 개인사업자 일 때</td><td><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td></tr> <tr> <td>차주가 법인 일 때 (1인)</td><td><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td></tr> <tr> <td>자동차구입때</td><td><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input type="checkbox"/> 영업목적 차량 구입</td></tr> <tr> <td>기타</td><td><input type="checkbox"/>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2 항 제 4 호, 제 5 호에 해당</td></tr> <tr> <td>보증종류</td><td>특정근보증: 당해채무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br/><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단, 장애인 영업목적을 위한 자동차 구입시 100%)</td></tr> <tr> <td>연대보증인 1</td><td>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br/>(인)</td><td>생년월일</td></tr> </table> </td></tr> <tr> <td>자택주소</td><td> <table border="1"> <tr> <td style="height: 40px;"></td><td>신청인과의관계</td></tr> <tr> <td style="height: 40px;"></td><td>전화번호</td></tr> </table> </td></tr> <tr> <td>직장(사업자)명</td><td>부서명</td></tr> <tr> <td>직위</td><td>재직(사업)기간</td></tr> <tr> <td>보증내용</td><td>보증최고채무액      원      보증기간</td></tr> <tr> <td></td><td style="text-align: right;">년      개월</td></tr> </table>  | 차주가 개인사업자 일 때 |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 차주가 법인 일 때 (1인) |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 | 자동차구입때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input type="checkbox"/> 영업목적 차량 구입 | 기타 | <input type="checkbox"/>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2 항 제 4 호, 제 5 호에 해당 | 보증종류 | 특정근보증: 당해채무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br><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단, 장애인 영업목적을 위한 자동차 구입시 100%) | 연대보증인 1 |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br/>(인)</td><td>생년월일</td></tr> </table> | △<br>(인) | 생년월일 | 자택주소 | <table border="1"> <tr> <td style="height: 40px;"></td><td>신청인과의관계</td></tr> <tr> <td style="height: 40px;"></td><td>전화번호</td></tr> </table> |  | 신청인과의관계 |  | 전화번호 | 직장(사업자)명 | 부서명 | 직위 | 재직(사업)기간 | 보증내용 | 보증최고채무액      원      보증기간 |  |
| 차주가 개인사업자 일 때   |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주가 법인 일 때 (1인) |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구입때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input type="checkbox"/> 영업목적 차량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input type="checkbox"/>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2 항 제 4 호, 제 5 호에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종류            | 특정근보증: 당해채무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br><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단, 장애인 영업목적을 위한 자동차 구입시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대보증인 1         |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br/>(인)</td><td>생년월일</td></tr> </table>   | △<br>(인)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인)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택주소            | <table border="1"> <tr> <td style="height: 40px;"></td><td>신청인과의관계</td></tr> <tr> <td style="height: 40px;"></td><td>전화번호</td></tr> </table>  |               | 신청인과의관계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과의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장(사업자)명        | 부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위              | 재직(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내용            | 보증최고채무액      원      보증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약정에 따른 여신취급액 (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원의 총액)의 130%입니다. (단 자동차 구입시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대 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차주가 개인사업자 일 때</td><td><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td></tr> <tr> <td>차주가 법인 일 때 (1인)</td><td><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td></tr> <tr> <td>자동차구입때</td><td><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input type="checkbox"/> 영업목적 차량 구입</td></tr> <tr> <td>기타</td><td><input type="checkbox"/>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2 항 제 4 호, 제 5 호에 해당</td></tr> <tr> <td>보증종류</td><td>특정근보증: 당해채무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br/><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단, 장애인 영업목적을 위한 자동차 구입시 100%)</td></tr> <tr> <td>연대보증인 1</td><td>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br/>(인)</td><td>생년월일</td></tr> </table> </td></tr> <tr> <td>자택주소</td><td> <table border="1"> <tr> <td style="height: 40px;"></td><td>신청인과의관계</td></tr> <tr> <td style="height: 40px;"></td><td>전화번호</td></tr> </table> </td></tr> <tr> <td>직장(사업자)명</td><td>부서명</td></tr> <tr> <td>직위</td><td>재직(사업)기간</td></tr> <tr> <td>보증내용</td><td>보증최고채무액      원      보증기간</td></tr> <tr> <td></td><td style="text-align: right;">년      개월</td></tr> </table> | 차주가 개인사업자 일 때  |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 차주가 법인 일 때 (1인) |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 | 자동차구입때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input type="checkbox"/> 영업목적 차량 구입 | 기타 | <input type="checkbox"/>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2 항 제 4 호, 제 5 호에 해당 | 보증종류 | 특정근보증: 당해채무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br><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단, 장애인 영업목적을 위한 자동차 구입시 100%) | 연대보증인 1 |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br/>(인)</td><td>생년월일</td></tr> </table> | △<br>(인) | 생년월일 | 자택주소 | <table border="1"> <tr> <td style="height: 40px;"></td><td>신청인과의관계</td></tr> <tr> <td style="height: 40px;"></td><td>전화번호</td></tr> </table> |  | 신청인과의관계 |  | 전화번호 | 직장(사업자)명 | 부서명 | 직위 | 재직(사업)기간 | 보증내용 | 보증최고채무액      원      보증기간 |  | 년      개월 |
| 차주가 개인사업자 일 때  |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주가 법인 일 때 (1인)  |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구입때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input type="checkbox"/> 영업목적 차량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input type="checkbox"/>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2 항 제 4 호, 제 5 호에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종류   | 특정근보증: 당해채무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br><input type="checkbox"/> 특정근보증 <input type="checkbox"/> 한정근보증 (단, 장애인 영업목적을 위한 자동차 구입시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대보증인 1  |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br/>(인)</td><td>생년월일</td></tr> </table>  | △<br>(인)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인)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택주소   | <table border="1"> <tr> <td style="height: 40px;"></td><td>신청인과의관계</td></tr> <tr> <td style="height: 40px;"></td><td>전화번호</td></tr> </table> |  | 신청인과의관계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과의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장(사업자)명   | 부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위   | 재직(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내용   | 보증최고채무액      원      보증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약정에 따른 여신취급액 (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원의 총액)의 130%입니다. (단 자동차 구입시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대보증인     | 기타 특약사항   |
| 계약관련 고지사항 | <p>1.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p> <p>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시 고객께서는 상기 내용을 제공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겸증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
| 리스회사      | <p><b>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b><br/>서울특별시 종구 한강대로 416, 10 층 (남대문로 5 가, 서울스퀘어빌딩)<br/>대표이사 프리츠 빌헬름 카바움</p>    |
| 금융담당직원    | 리스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을 확인하였습니다.<br>성      명 : _____  |

|   |                     |     |
|---|---------------------|-----|
| 리스이용자(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주요내용인 신청사항 및 리스조건 세부사항 그리고 약관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신 청 인(본인) : _____   | (인) |
| 연대보증인   | 연 대 보 증 인 1 : _____ | (인) |







#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 제 21 조 (계약의 도해지)

-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 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등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 조 제 3 항 및 제 4 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재권보증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고액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 사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 1 항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제 15 조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에 기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련을 해대한 경우  
 ④ 고객에게 규정된 금지사항을 행한 경우  
 ⑤ 고객에게 규정된 금지사항을 행한 경우, 고액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리스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제 22 조 (도해지에 따른 정상)

- ① 고객은 제 21 조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 23 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제 24 조에 따른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규정손해배상금과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을 사전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을 주요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고객은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거당 일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과실 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한 고객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제 23 조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해지 고정기 동안 금융회사의 자동차평가를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⑤ 고객은 계약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제 1 항의 손해배상금 등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이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⑥ 고객은 계약의 도해지로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지 않고 철저히 미화수원금을 남부하여야 합니다.  
 ⑦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리스료로부터 지급여부에 따른 청구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⑧ 금융회사는 해지의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지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⑨ 금융회사는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을 고객에게서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 25 조 및 제 26 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 제 23 조 (규정손해배상금)

- ① 고객이 중도해지로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화수원금에 약정한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화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③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화수원금에 약정한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화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④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과 경과기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전잔여금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⑤ 규정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 24 조 (도해지손해배상금)

- ① 운용리스의 경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운용리스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화수원금에 약정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③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과 경과기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전잔여금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④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 25 조 (리스계약의 종료)

- ① 이 계약이 정기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 21 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리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고객이 리스기간 종료시 재�示는 신청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종료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정장잔여가치가 재�示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示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④ 제 3 항의 경우 재示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재示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 제 26 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 ① 고객이 이 계약의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여,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밖에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금 청구 등)에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거치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② 고객이 제 1 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잔여리스료와 관련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제 15 조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제 27 조 (초과운행부담금)

- ①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 당 초과운행료  
 ② 제 1 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일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제 28 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 이 계약이 정상으로 되거나 제 21 조에 의한 사유로 종도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 29 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역밀수에 따른 리스료 이외의 반환지연금을 벌지 않습니다.  
 1. 반환일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2. 고객이 책임 있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계약종반비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고객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 제 29 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정기금'에 따라 리스료를 산정하여 등록금에 대하여 지역배상금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역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 연체일수는 1일로 합니다.  
 \* 연체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과 원래일 중 하루만 포함  
 ② 제 1 항의 지급기일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③ 계약이 종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종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역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정기금'에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월리스료 + (월리스료 × 반환지연금율)) × 경과일수  
 ⑤ 금융회사가 리스료증금 등 경과체부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 1 항의 지역배상금에 따른 지역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⑥ 제 1 항의 지급기일 및 제 5 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 제 30 조 (통지금)

- ① 고객은 미납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9 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권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 3 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③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만료일에 도래하는 경우 만기대로 30 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 31 조 (관련서류의 보관 등)

- ①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제 32 조 (승계)

- ① 고객이 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정한 신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제 3 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심사비용 등 승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승계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승계수수료는 미화수원금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 제 3 항의 승계수수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의 전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승계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승계업무 처리에 필요 비용을 감안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약정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 33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제 34 조 (부록)

- ① 고객은 정기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 21 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리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고객이 리스기간 종료시 재示는 신청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종료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정장잔여가치가 재示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示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④ 제 3 항의 경우 재示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재示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 약관

여신금융협회 약관신고 수리일자 : 2019.07.31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메르세데스 벤츠 피아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인출하거나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전자금융보조설비"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개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율업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다. 전자금융업무 및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라. 기록부록 다른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화장치, 자동입출금기, 천화기 등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증명제작"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체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적 키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상정성 정보 또는 인증서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족 또는 나머지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더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자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자"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시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결제방법"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리를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화와 그 대가의 자금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유통能让할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종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가. 금융회사 외의 제 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이상('통계법',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3. "기여금"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5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자체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주식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수신자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달기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 4 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결제대금, 손금액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달기기에 의한 거래
-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동록)**

-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경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16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경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인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경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3. 경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인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 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별급 예정사항을 알린 후 20 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 6 조 (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 3 자가 권리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 7 조 (이용시간)**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 개월 전부터 1 개월간 알립니다.

**제 8 조 (수수료)**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25 조를 준용합니다.

**제 9 조 (추심이체의 출금 등)**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 hiện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전화)으로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화(ARS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화(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 ③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거래자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확인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통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통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거래의 제한)**

-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 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를 피해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증서 유틸리티가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주간마다 보안처치를 거부한 경우
7. 기타 이용자(여기에는 전자금융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자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망 등으로 거래자에게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 제 11 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1. 전자지급거래의 경우: 거래자에게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폐폐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자에게 된 전자지급수단의 정보가 수취인의 정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자에게 된 전자지급수단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자에게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거래자와의 철회 및 청탁)**

- ① 이용자는 제 11 조에 의하여 원로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자에게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자에게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③ 실시간 아동으로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원로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자에게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의 상당피상성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자에게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원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오타와 정정 등)**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타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전형적 규정에 따른 오타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타가 있음을 알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오타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4 조 (사고와의 처리)**

-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변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 1 항의 신고로 이용자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자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및 연체)**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치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자와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거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 3 항의 신고로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접수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하는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 1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2 조 제 3 자가 권리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자와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 일이 거부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노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원('증券기법', 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법)에 제외합니다) 이용자가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절차화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7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9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0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2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3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4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5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6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7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8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9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20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2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22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23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24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25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26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27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28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29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30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3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32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33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34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35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36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37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38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39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40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4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42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43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44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45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46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47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48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49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50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5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52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53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54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55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56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57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58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59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60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6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62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63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64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65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66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67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68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69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70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7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72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73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74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75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76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77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78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79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80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8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82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83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84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85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86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87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88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89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90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9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92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93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94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95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96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97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98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99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00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0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02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함인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 103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 제 16 조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자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 2 조 제 4 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 제 17 조 (거래기록의 보존)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거래계획의 명칭 또는 번호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마. 추심이익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등의 내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제 18 조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 1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여 제공 법령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 제 19 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리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는 제 20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 20 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 1 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 제 21 조 (거래내용 녹음)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제 22 조 (비밀보장의무 등)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개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금융회사의 권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권리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제 23 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제 24 조 (금융회사의 인정성 확보 의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인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분야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 25 조 (약관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을 때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게시하거나 통지에 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 26 조 (약관책임의 우선순위)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달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예산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 제 27 조 (이의제기 및 현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분쟁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 28 조 (재판권)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29 조 (준법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